

## 주식(액면)병합에 따른 공고

당사는 2026년 03월 24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 주식·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6년 04월 09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가 액면금액 5,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주식병합 공고를 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주식병합의 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및 주가안정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
2. 주식병합의 내용 :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금액 5,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
3. 주식병합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 (2026년 03월 24일 기준)

구분	병합 전	병합 후	비고
1주당 액면금액	500원	5,000원	
발행주식총수	84,175,847주	8,417,584주	
자본금의 액	44,017,513,500원	44,017,510,000원	

#### 4. 병합일정

- (1) 구주권 제출 기간 : 주식·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
- (2) 주식병합공고 : 2026년 03월 24일
- (3) 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26년 04월 07일 ~ 2026년 04월 30일
- (4) 주식병합 권리배정기준일 : 2026년 04월 08일
- (5) 주식병합 기준일: 2026년 04월 09일
- (6) 주식병합 효력발생일: 2026년 04월 09일  
(주식·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발생)
- (7) 신주 상장 예정일: 2026년 05월 04일

5. 본 주주총회일인 2026년 03월 24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04월 09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.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함께
3. 의 주식병합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

6.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단주주는 '신주상장 초일 종가'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.

2026년 03월 24일



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  
각자 대표이사 조경숙, 서생규 (직인생략)